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2024년 5월 17일 상정, 5월 20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회계과장 권혁영)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4년도 평창군 균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변경계획은
 - 토지 취득(변경) : 5건 14필지 24,547㎡ 1,785,730천원
 - 건물 취득 : 5건 5동 6,310.74㎡ 26,220,000천원

○ 토지 취득(변경)은

- 1.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변경) : 3필지, 17,164㎡, 424,524천원

* 당초 : 2필지, 10,162㎡, 312,132천원

(증 2필지, 11,812㎡, 170,112천원 / 감 1필지, 4,810㎡, 57,720천원)

2.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사업 : 5필지, 1,441㎡, 398,886천원
3.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사업(기부채납) : 3필지, 681㎡, 317,920천원
4.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사업(매입) : 1필지, 361㎡, 144,400천원
5.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건립사업 : 2필지, 4,900㎡, 500,000천원

○ 건물 취득은

1. 진부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 1동, 2,100㎡, 9,670,000천원
2. 평창지역자활센터 이전 신축사업 : 1동, 941㎡, 4,000,000천원
3.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사업 : 1동, 1,600㎡, 8,000,000천원
4.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사업 : 1동, 769.74㎡, 3,000,000천원
5.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건립사업: 1동, 900㎡, 1,550,000천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영옥)

-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 또는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르면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등이 해당됩니다.
- 1건당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10억원이상 또는 2,000㎡이상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이며,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

-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 : 5건 14필지 24,547㎡ 1,785,730천원

건물 취득 : 5건 5동 6,310.74㎡ 26,220,000천원이며

-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8건으로 31,445㎡, 6,023,688천원이며

건물은 총 8건으로 11,252㎡, 40,688,731천원이 되겠습니다.

□ 사업내용을 보면

1. 먼저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사업비 9,670백만원을 투입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진부 체육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100㎡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 본 사업은 2023년 수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도심사)에서 조건부 승인¹⁾을 받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완료한 상태입니다.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수영장 건립 요구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생활체육

1) 수시2차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

가. 지역주민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시설 운영계획 마련

나.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익 창출방안 마련

다. 체육인들의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방안 마련

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참여도를 높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진부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우리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부각될 수 있고 관리상의 효율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준공 후의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매년 수영장 운영 경비에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비 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음은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 2022년 12월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반영되어 토지 2필지 10,162㎡²⁾ 취득계획이 승인되었고
2023년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파크골프장 회원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평리 산258번지를 추가 매입, 총 3필지
17,164㎡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변경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투자심사³⁾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
도 공모사업을 신청,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파크골프장 확장을 통하여 장시간 대기 등 이용객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시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장평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절·성토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공사차량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2) 토지 10,665㎡ 매입(308백만원)하여,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구역 내에서 면적
(10,162㎡), 사업비(328백만원) 등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가 아니므로 변경계획 수립 대상 아님.

3) 2024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2024.04.12)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나. 도비확보를 통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

방지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평창군 파크골프장 현황

읍면	위치	면적(㎡)	홀수	개장일	비고
평창읍	평창읍 종부리 965	22,640	18홀	2014.1.	
대화면	대화면 대화리 734-5	20,501	18홀	2016.5.	
용평면	용평면 장평리 649	9,700	9홀	2017.8.	
봉평면	봉평면 덕거리 952-38	14,509	19홀	2021.8.	
진부면	진부면 하진부리 418 외	26,309		추진중	

3. 다음은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입니다.

- 2023년 5월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 토지 3필지 3,639㎡⁴⁾와 지장물(소나무) 70주 취득계획이 승인되었고 2023년 5월 투자심사⁵⁾를, 2023년 8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건축물 취득(연면적 941㎡, 지상 2층, 4,000백만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은 총 5,30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대체시설 확보를 위하여 푸드뱅크 리모델링 대신 후평리의 노성회관을 2년간 (2024. 4. ~ 2026. 3.)임차하였습니다.
- 제출된 계획안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향후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사업의 경쟁력을

4) 토지 3,498㎡ 매입(850백만원)하여,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구역 내에서 면적(3,639㎡), 사업비(868백만원) 등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가 아니므로 변경계획 수립 대상 아님.

5) 2023년 제2차 자체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2023.05.30.)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모사업 등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제고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음은 『평창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기업 근로자가 체류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임대형 주거공간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413-1번지 외 5필지에 사업비 8,000백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1동 (연면적 1,600㎡, 지상4층)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2024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35억원으로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⁶⁾을 받았습니다.
- 대상부지는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⁷⁾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주 용도가 주거시설로 유해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행위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대상지가 대화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학교의 주 통학로와 대상지 진입로가 겹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등하교 등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청년 인구가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주거안정의 공익적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긍정적 모델로 자리잡을

6) 2024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2024.04.26.)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사업에 맞춰 변경하여 사업 추진

7)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공사 시 소음·분진 발생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해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상에 노상주차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음은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 2019년 4월 남산 자유치유센터 건립으로, 12월 힐링투어센터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고 2020년 12월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테마사업 조성을 위해 위 2개 사업을 포함하여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으로 사업명칭을 통합하여 변경안을 의결을 받았으며 금회 건축물 신규 취득을 위하여 **치유센터 1동(지상2층 연면적 769.74㎡)**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완공 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정서 함양과 정신적·육체적 재충전의 기회 제공은 물론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노람뜰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⁸⁾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업무편람에 의하면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본 사업은 2020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비는 30억이며 2024년 당초예산에 15억원, 2023년 18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2022년도에 건축물 신규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절차상 시기를 일실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 금회 승인으로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행위로 추정 가능한 지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공공복리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⁹⁾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사후 승인 절차로 위법한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¹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취득대상 재산이 준공된 시설물이 아닌 사업 시행 과정에 있는 장래 취득 자산인 점,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점, 기 투자된 부분의 손실 등을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이므로 향후에는 심의를 통하여 취득재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치유의 숲 개장 전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역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행정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감독청이나 법원의 무효 판정이 없이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힘

10)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치유의 숲”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현황

구 분	제245회 임시회(' 19.4)	제251회 정례회(' 19.12)	제262회 정례회(' 20.12)
안 건	2019년 2차변경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명	평창읍 남산 자연치유센터 건립	평창군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취득내용	○ 토지 - 평창읍 상리 402-1 외 27필지 46,549㎡ 2,265,926천원 ○ 건물 - 1동 182.51㎡ 239,012천원	○ 토지 - 평창읍 상리 산45-1 외 28필지 105,537㎡ 1,950,000천원	○ 토지 - 평창읍 상리 327 외 26필지 157,168㎡ 2,061,556천원 ○ 건물 - 2동 179.36㎡ 149,308천원 ○ 지장물 - 1건 200,000천원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 2013년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수립하고 사업추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질의(협의)결과 현 시점에라도 사후 치유가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수립.
- 2017년 9월 15일 의회에서 사후 승인함.

충주시 사례

- 2017년 11월 법원 경매를 통해 옛 한전연수원 소유권을 확보한 민간인 A씨와 매매 의향서를 체결한 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자 시의회의 매입 승인 없이 27억2천만원에 매입 후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유자를 충주시로 표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20년 7월 23일 사후 승인함.

경주시 사례

- 2023년 新실크로드 520 조성사업 추진시 3년간 3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
- 2024년 2월 23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후 승인함.

6. 다음은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 본 사업은 노외주차장(도시계획시설)으로 사용 중인 대화리 967-4번지 외 2필지에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화 탄-짓 상상센터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 계획에 수립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화면 대화리 968-3번지 외 3필지를 기부채납 및 매입하는 건입니다.
-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을 시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던 마을 주민 및 다함께돌봄센터, 꿈의대화 톡톡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불법주차 유발, 보행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고 토지 보상없이 기부채납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므로 금회 대체 주차장 확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연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대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축 건물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마지막으로 『대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의 도모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257-1번지 외 1필지에 사업비 2,50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건물 1동(900㎡)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 본 사업은 2024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향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¹¹⁾을 받았습니다.

- 2024년 4월 미탄지소가 개소하면서 현재 평창군에는 봉평면과 대화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상황이며 대화지소 신축 시 대화면 농업인의 편의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방림지소로부터의 운반시간 절약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감소, 신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등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임대 농기계 구입 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작물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장비 구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검토 의견

-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향후 재산 취득시에는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초등학교 인근의 건설공사 시에는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 2024년 제2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2024.04.26.)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 의견 요지 : 《회의록 참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부.

2024년도 제2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취득 합계(5건, 14필지)			24,547	1,785,730			
소계(1건, 3필지)			17,164	424,524			
1	전	용평면 장평리 404-3	5,352	254,412	2023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변경)	평창군
2-1	임	용평면 장평리 산281	△4,810	△57,720	2023		김**
2-2	임	용평면 장평리 산281-2	5,313	53,130	2023		평창군
3	임	용평면 장평리 산258	6,499	116,982	2024		산림청
소계(1건, 5필지)			1,441	398,886			
1	대	대화면 대화리 413-1	298	79,566	2024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	정**
2	대	대화면 대화리 413-2	245	65,415	2024		정**
3	전	대화면 대화리 414-3	650	186,387	2024		정**
4	대	대화면 대화리 414-4	145	39,476	2024		정**
5	대	대화면 대화리 414-30	103	28,042	2024		정**
소계(1건, 3필지)			681	317,920			
1	대	대화면 대화리 968-3	496	238,080 (기부채납)	2024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	윤**
2	대	대화면 대화리 960-7	73	35,040 (기부채납)	2024		윤**
3	대	대화면 대화리 960-8	112	44,800 (기부채납)	2024		윤**
소계(1건, 1필지)			361	144,400			
1	답	대화면 대화리 968-4	361	144,400	2024	대화 대체주차장 조성	윤**
소계(1건, 2필지)			4,900	500,000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대화면 대화리 1257-1	4,722	487,000	2024	농기계임대 사업소 대화지소 부지 매입	손**
2	답	대화면 대화리 1257-2	178	13,000	2024		손**
건물취득 합계(5건, 5동)			6,310.74	26,220,000			
1	전	평창읍 후평리 752-2 외 2필지	941	4,000,000	2026	평창지역 자활센터 이전신축	
2	체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	2,100	9,670,000	2027	국민체육센터 신축	
3	대	대화면 대화리 413-1 외 5필지	1,600	8,000,000	2027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	
4	임	평창읍 상리 333-1 외 2필지	769.74	3,000,000	2024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조성	
5	답	대화면 대화리 1257-1 외 1필지	900	1,550,000	2025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	